

제3세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高文炫*

《 차 례 》

- I. 서설
- II. 제3세대 인권 이론의 전개 및 그 이론적 정당화 시도
- III. 제3세대 인권의 종류·이념·특색
- IV. 제3세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 V. 결론

I. 서설

人間은 自然 속에서 태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이다.¹⁾ 따라서 人間은 自然과의 調和를 이루면서 科學과 技術을 발달²⁾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環境을 이용하는데 관심을 주로 기울였을 뿐³⁾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가지고 環境을 保護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여 왔다. 이러한 점은 지난 30여 년간 無意思決定理論(Non-decision Making Theory)⁴⁾에 터잡은 成長드라이브政策에 치중하

*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1) 줄저, 『환경보호의 법적 과제』,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9쪽.

2) 環境問題와 相關한 自然科學技術의 이용, 통제, 바람직한 방향제시 등에 대하여는 John H. Barton, "The Impact of Technology on Legal Systems: Thoughts For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Academic Law Conference, 1997. 10. 11. 세미나발표문(존 에이치 바튼/丁相朝 譯, "기술이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시각에서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3·4권[통권 105호], 1997. 12, 62-77쪽) 참조.

3) 인도 히마찰프라데시 지방의 약56km에 달하는 도로 인근 히말라야바위들에 원색의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광고들이 울긋불긋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 광고효과는 만점이지만 다양한 이끼류가 페인트로 인해 없어져 버렸는데, 설상가상으로 콜라회사들이 광고를 지우려 할 경우 페인트제거에 상당량의 화학약품이 필요해 더 많은 생태계파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그 극단적인 예이다. 조선일보 2002. 8. 17. 12쪽.

4) Peter Bachrach & Morton Baratz, "Two Faces Of Power", APSR, Vol. 56, 1962, 948쪽.

여 環境汚染의 급속한 惡化를 초래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더욱 분명하다.⁵⁾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주요원인으로는 인구증가,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다.⁶⁾ 특히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환경문제의 원인이 된다. 첫째, 과학기술이 얼마 전 까지 인류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느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소홀히 한 것이다. 둘째,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과학기술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환경문제에의 효율적 대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⁷⁾

- 5) “한국의 이산화탄소증가를 세계1위”, 동아일보, 1997. 8. 6. 31쪽; “시민 4.6%만이 수도물 그냥 마신다”, 국민일보, ‘삶의 질을 높이자’ 특별기획, 1998. 5. 19. 1쪽 톱기사 및 3쪽. 1997. 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전국 1천 4백명을 대상으로 상수도음용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또 불신의 원인으로는 ‘상수도 오염’이 53.8%로 가장 높게 꼽혔다; “소각찌꺼기 중금속과다(쓰레기소각장 3곳 카드뮴 등 기준치 최고 85배 초과)”, 도시쓰레기소각장의 소각찌꺼기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인 지정폐기물의 판정기준을 최고 85배 이상 초과하는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한강관리청의 분석결과 드러났다. 한겨레, 1997. 9. 30. 1쪽, 26쪽; 서울지역에 내리는 빗물의 산성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7월 18일 서울시가 펴낸 ‘2002 환경백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빗물의 연 평균 산성도(수소이온농도지수·pH)는 96년 5.7, 97년 5.2, 98년 4.9, 99년 5.0, 2000년 4.8에서 지난해 4.7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산성비는 pH 5.6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낮아수록 산도(酸度)가 강하다는 뜻이다. 산성이 강한 비가 오랫동안 내리면 건물, 다리 등 구조물을 부식시키고 식물의 수분흡수를 억제하거나 토양의 유기물 분해를 방해하는 등 생태계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 동아일보 2002. 7. 18.; 최근의 우리나라 환경상황에 대하여는 환경부, 『2004 환경백서』, 2004, 281-283쪽(백두대간의 훼손실태), 354-355쪽(먼지오염도), 356-357쪽(강우 중 산도), 390-394쪽(소음진동현황), 409쪽(수질현황), 429쪽(주요호소의 수질현황), 359쪽(주요도시의 중금속오염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제17호, 2004, 4쪽, 6쪽, 10쪽, 제2부(159쪽-342쪽) 등 참조.
- 6) 정준금·신연재·최병철·한상진, 『환경과 사회』, 대영문화사, 1999, 19-30쪽.
- 7) 정준금·신연재·최병철·한상진, 위의 책, 28쪽. 이것과 관련하여 베토벤(Rudwig van Beethoven)의 死因이 중금속에 너무나 많이 오염된 물고기를 너무 즐겨 먹어 결국 납중독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는 示唆하는 바가 많다. 즉 1827년 베토벤이 56세로 사망했을 때 死因은 肝臟病(Leberleiden)과 水腫(Wassersucht)으로 알려졌으나, 위 死因은 베토벤의 장례식 직후에 의문을 증폭시켰다. 베토벤의 사후 61년 후(1888년)에 그 유골은 빈(Wien)의 중앙묘지로 운반되었다. 그러나 임상기록과 사체해부 조사결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멸실되었다. Chicago에 있는 한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1998년 6개월 동안 베토벤의 15cm길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가지고 몸전체의 DNS[Desoxyribo(se)nukleinsäure, 디옥시리보스核酸]구조를 분석한 결과, 베토벤의 死因이 간장병이나 수종, 모르핀(Morphium)과 砒素(Arsen)를 함유한 돌팔이 의사 등 때문이 아니라 중금속에 너무나 많이 오염된 물고기를 많이 먹어 결국 납중독 때문이라는 정확한 死因을 밝혀내게 되었다. Die Welt, 1999. 2. 15, 1쪽; 또한 석유 유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1989년 3월 엑손 발데즈호(Exxon Valdez)가 알라스카의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 해안에서 좌초하여 약 4만

일반적으로 환경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⁸⁾

첫째, 환경문제는 상호관련성⁹⁾이 강하게 나타난다. 환경문제는 상호작용하는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상호간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통하여 문제거리 상승작용을 일으켜 그 심각성을 더해 간다. 예를 들면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폐기물문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문제는 시차성¹⁰⁾을 갖는다. 환경문제는 문제의 발생과 이로 인한 영향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러브커널(Love Canal)사건은 유해 폐기물을 매립한 후 30여 년 이상이 지난 후에 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¹¹⁾ 일본의 공해병으로 알려진 미나마타병¹²⁾이나 이타이이타이병도 오랜 기간동안 배출된 오염물질의 영향이었다.

셋째, 환경문제는 탄력성과 비가역성을 갖는다. 어느 정도의 환경악화는 환경이 갖는 자체 정화 능력 즉 자정능력에 의해 쉽게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악화가 가속화되고, 심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넷째, 환경문제는 광역성¹³⁾을 한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어느 한 지역,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 국가간의 문제로 되었으며, 공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권을 형성한다. 환경문제의 논의는 불특정다수인과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다루게 되며, 환경오염에 대한 광역적인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국제협약 등 국가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섯째, 환경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쓰레기소각장의 설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비교형량하여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여섯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환경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오늘날의 환경피해는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오

톤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하여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 해안선의 약 15%와 인접한 알라스카만이 기름으로 오염되었다. 이 석유유출사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곱사송어(pink salmon)를 연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것보다 석유 유출로 인해 약 100배 정도나 더 큰 피해를 어류가 입는다는 점과 석유 유출로 인한 오염 물질이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어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http://www.nandotimes.com/noframes/story/> 1999년 4월 5일.

8)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4, 3-4쪽.

9) 이것을 복합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준금·신연재·최병철·한상진, 앞의 책, 31쪽.

10) 이것을 지체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준금·신연재·최병철·한상진, 앞의 책, 34쪽.

11) 여기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정준금·신연재·최병철·한상진, 앞의 책, 35쪽 참조.

12) 여기에 대하여는 구와바라시세이(桑原史成) 저, 구와바라 가즈코(桑原和子) 옮김, 『미나마타의 아픔』, 을지서적, 1990, 157-174쪽 참조.

13) 이것을 초국가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준금·신연재·최병철·한상진, 앞의 책, 36쪽 참조.

고 있으므로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 전개와 관련하여 그 특징 내지 추세로서 자연법사상의 부활과 인권의 국제화 현상 및 인권의 사회화현상이 이야기된다. 이것은 1945년 이후 새롭게 제정된 개별국가의 헌법들¹⁴⁾과 세계적 차원¹⁵⁾ 또는 지역적 차원¹⁶⁾의 인권선언들에서 인간의 존엄을 고백하고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선언함과 동시에 종래의 자유권 외에 사회적 기본권 또는 사회국가를 수용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들 문서들에 규정된 기본권을 보면 자유권과 참정권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70년대 초부터 제3세대 인권이란 새로운 인권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인권의 세대구분은 새로운 이론적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실용주의적 필요성 때문에 행해지고 있고, 그러한 한에서 제3세대 인권이란 개념은 회의적 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⁷⁾ 따라서 제3세대 인권이 이론적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될 지 또는 단순한 유행어로 끝나게 될 지 더 나아가서 국제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실효화 될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제3세대 인권에 대한 학자들의 찬성·반대와는 관계없이 그것이 새로운 종류의 인권의 하나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평있는 교과서에서도 간략하게나마 소개되고 있을 정도이다.¹⁸⁾ 이하에서는 제3세대 인권이론의 전개 및 그 이론적 정당화 시도를 알아본 후, 제3세대 인권의 종류·이념·특색을 고찰해 보고, 제3세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제3세대 인권 이론의 전개

1. 종래의 인권

인권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의 가장 보편적인 분류방법

14) 1946년 11월의 일본헌법, 1949년 5월의 독일의 기본기본법 등.

15) 1948년 12월의 국제연합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12월의 국제연합 인권규약 등이 대 표적이다.
Armin Barthel, Armin Barthel, Die Menschenrechte Der Dritten Generation, Alano Verlag, 1991, 14쪽.

16) 1950년 11월의 유럽인권규약이 대표적인 예이다.

17) L. Kühnhardt는 “인권개념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Armin Barthel, 앞의 책, 94-114쪽.

18) 金哲洙,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296쪽; 崔大權, 「헌법학강의」, 박영사, 2001, 191-192쪽.

은 옐리네크(G. Jellinek)의 지위론(Statuslehre)의 영향을 받아 인권을 자유권, 정치적 권리, 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나누는 방법이다.¹⁹⁾ 이 분류 방법에 따르면 우선 인권은 18세기 초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과 미합중국의 독립 및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자유권 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이 권리들은 국가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어권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가져 온 여러 가지 변화, 특히 그 가운데서도 無產者를 희생하게 된 자유권의 남용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전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낳았으며 이것은 사회적 인권이란 형태로 실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사회적 인권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 급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급부권이라고도 하고, 국가의 급부에 참여할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권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들 두 종류의 인권은 이제 각국의 실정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실정화되고 있으며, 국제법에서도 국제연합 인권규약의 형태로 성문화되어 있다.

2. 새로운 인권과 그 이론적 정당화 시도

인권의 개념을 변화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1972년 바작(Karel Vasak)은 인권의 세대 개념을 고안해 내었다. 그는 이미 국제 인권법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1세대 인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제2세대 인권이라 부르고 이에 제3세대 인권, 즉 새로운 인권(Les nouveaux droits de l'homme)인 連帶權(droits de solidarite)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바작은 이러한 연대권에 속하는 권리로 처음에는 건강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 깨끗한 물을 요구할 권리, 깨끗한 공기를 요구할 권리 및 평화권을 열거하였다. 그 후 바작은 1977년에는 제3세대 인권의 목록을 경제발전권, 깨끗한 환경권, 평화권 및 인류 공동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수정하였고, 1979년에는 여기에 의사소통권을 첨가하였다. 바작은 제3세대 인권의 특색을 비교적 비정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바작에 따르면 서구의 산업 국가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존중하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3세대 인권은 그러한 정치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인간의 사회생활의 기본적 요청들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3세대 인권은 모든 사회 동반자(Sozialpartner), 즉 개인, 국가, 공·사의 단체 및 국제공동체가 결합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19) G. Jellinek,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1905, 81쪽, 91쪽;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1997, 114쪽.

20) Armin Barthel, 앞의 책, 45-46쪽.

이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 동반자의 連帶責任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새로운 인권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한 학자는 알스톤(Philip Alston)이다.²¹⁾ 알스톤은 人權觀이 변화하고 현실에 적용할 필연성을 인권 이념의 내적 역동성과 자연적 진화로부터 정당화하기 위하여 부모에 대한 자녀의 관계, 즉 한 세대가 자라나는 세대로부터 분리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와 분리되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이며, 이러한 법칙과 일치되어야 인간은 계속될 수 있고 문명은 진보하고 변화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인권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알스톤에 따르면 인권관은 정태적인 것도 그렇다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며 그것은 오직 사회적·세계적 변화의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그는 인권 이념은 본질적으로 동태적 성격을 가지므로 意味轉換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성과 중요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3. 새로운 인권에 대한 UNESCO의 논의

제3세대 인권은 특히 UNESCO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받았다. 1978년 UNESCO 평화·인권 분과위원회(UNESCO Abteilung für Frieden und Menschenrechte)에 의하여 인권 침해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 모임(Expertentreffen)이 구성되었다.²²⁾ 이 전문가 모임은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제한되지 않으며, 연대권은 인권의 새로운 범주임을 분명히 하고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경제발전권, 평화권, 깨끗한 환경권 및 인류공동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들었다. 그러나 위 모임은 종래의 인권규약 외에 새로운 인권규약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연대권의 의미를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권리들을 인권규약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²³⁾ 제20차 UNESCO총회의 결정에 따라 1980년 8월에는 멕시코시티(Mexiko City)에서 새로운 인권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콜로키움(Expertkolloquium)이 개최되어 바작이 제시한 다섯 개의 새로운 인권 외에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different)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²⁴⁾ 이 콜로키움에서는 이들 권리 외에 "인도적 도움을 요구할 권리(Recht auf humanitäre Hilfe)"가 새로운 인권으로서

21) Phillip Alston, "A Third Generation of Solidarity Rights: Progressive Development or Obfus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29 Neth. Int'l L. Rev. 307, 1985, 307쪽 이하.

22) Armin Barthel, 앞의 책, 49쪽.

23) Armin Barthel, 앞의 책, 50쪽.

24) Armin Barthel, 앞의 책, 51-53쪽.

제시되기도 하였다.²⁵⁾ 그러나 제3세대 인권 일반에 대하여는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라는 견해와 그 구상 자체가 불명료하다는 입장이 서로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그런가 하면 의사소통권과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연대권의 범주에 속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⁶⁾

Ⅲ. 제3세대 인권의 종류 · 이념 · 특색

1. 제3세대 인권의 종류

어떤 권리를 제3세대 인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정설이 없다. 예컨대 제3세대 인권론의 창시자인 바작은 제3세대 인권에 속하는 권리로 경제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인류 공동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 및 의사소통권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으며, 푸쯔(G. Putz)는 바작의 목록에서 의사소통권을 빼는 대신 참여권과 自決權을 더하여 여섯 가지를 든다. 힐페르트(K. Hilpert)는 바작의 목록에 문화적 상이성을 주장할 권리를 첨가하여 여섯 가지를 들고 있고, 크릴레(M. Kriele)와 쿤하르트(L. Kühnhardt)처럼 제3세대 인권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발전권, 환경권, 평화권의 세 가지를 든다. 이 밖에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 8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새로운 인권에 대한 전문가 콜로키움에서는 바작의 목록 외에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와 인도적 도움을 요구할 권리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金哲洙教授는 개발에 대한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의사소통의 권리,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 건강하고 조화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인류공동유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 인도적 구조를 받을 권리 등을,²⁷⁾ 崔大權教授는 제3세대 인권으로 개발의 권리(the right to development), 평화의 권리(the right to peace),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인류공통의 유산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인도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²⁸⁾ 거론하고 있다.²⁹⁾

25) Armin Barthel, 앞의 책, 51-53쪽.

26) Armin Barthel, 앞의 책, 51-55쪽.

2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296쪽.

28)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 2001, 191쪽.

29) 이 중에서 특히 개발에 대한 권리와 환경에 대한 권리가 충돌되는 면이 있는데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Sumudu Atapattu, "The Right To A Healthy Life Or The Right To Die Polluted?: The Emergence Of A Human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16

2. 제3세대 인권의 이념

제1세대의 인권이 국가의 침해로부터의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 방어를 내용으로 하는 인권을 주로 지칭하고, 제2세대의 인권이 산업화 및 사회주의의 등장과 함께 태어난, 국가의 적극적 관여를 요구하는 내용의 사회적 기본권을 일컫는다면, 제3세대 인권은 위의 제1세대 인권 개념 및 제2세대 인권 개념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탈식민지시대의 범세계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필요를 대변하는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즉 제1세대 인권의 이념을 자유, 제2세대 인권의 이념을 평등이라 한다면, 제3세대 인권의 중심 이념은 연대이다. 연대는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인 자유, 평등, 형제애 가운데 형제애에 대한 현대적 표현이다.³¹⁾

3. 제3세대 인권의 특색³²⁾

제3세대 인권의 특색은 첫째, 인간의 사회생활의 기본적 요청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에 비하여 비교적 비정치적인 것이다. 둘째, 제3세대 인권은 모든 사회동반자(Sozialpartner), 즉 개인, 국가, 공·사의 단체 및 국제공동체가 결합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이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동반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셋째,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이 국가 내부의 문제로 제기되어 국내법의 차원에서 해결되고 국제법적인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제3세대 인권은 국내법적 차원이 아닌 국제법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그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의 주체가 개인임에 반하여 제3세대 인권의 주체는 그것이 민족이든 국가이든 집단이다. 그러한 한에서 제3세대 인권은 전통적 의미의 인권이 아니다. 다섯째, 제3세대 인권은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에 대한 종합(Synthese)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러나 제3세대 인권을 종합권(Syntheserecht)으로 획득한다는 말은 이미 인정되어 있는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을 제3세대 인권으로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인권을 새로운 인권으로 보충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제1세대 인권과 제2

Tul. Evtl. L. J. 65, 2002, 116-125쪽 참조.

30) 崔大權, 위의 책, 191쪽.

31) Peter Saladin & Christoph Andreas Zenger, Rechte zukünftiger Generationen, Helbing & Lichtenhahn Verlag AG: Basel/Frankfurt am Main, 1988, 69-71쪽; 横田耕一, “人權の國際的保障と國際人權の國內的保障”, *ジュリスト*, No. 1022, 1993. 5. 1-15日號, 31쪽.

32) 崔大權, 앞의 책, 191-192쪽; 洪性邦, “제3세대 인권”, 「법정고시」, 1996. 2., 32-44쪽; 洪性邦, “인권과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한림법학 FORUM」, 제7권, 1998, 88-90쪽; Peter Saladin & Christoph Andreas Zenger, 위의 책, 69-71쪽; 横田耕一, 위의 글, 31쪽.

세대 인권이 이미 국제법질서에서 완성된(in esse) 권리라고 한다면 제3세대 인권은 생성 중에 있는(in fieri) 또는 그 인정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IV. 제3세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1. 보호목적에 대한 논의

증가하는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는 7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환경 침해에 대한 방어와 제거를 위한 권리형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 문제가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을 고려할 때 국제법 영역이 연관되는 것이다.³³⁾ 특별한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창설에 관하여 이렇게 이루어진 논의는 지난 몇 년간 인간 혹은 자연이 全地球的인 생태 목표 체계(Öko-Ziel-System)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을 주는 두 가지 입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³⁴⁾

현행 권리에 대한 이해³⁵⁾를 놓고 발생하는 환경권의 소위 “보호 목적”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이 기본 입장은 환경보호를 그리고 이와 함께 환경권의 성립을 인간의 자연적 생활기반으로 향하게 하는데 즉, 인간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⁶⁾ 그렇다고 자연에 고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인간을 위한 생활기반으로서의 그 기능에서만 법적으로 의미 있으며, 다르게 표현하자면 환경보호 범주는, 생명, 건강, 자연을 향유하는 것 그리고 소유권 등을 고려하여 인간 이해에 따라 구체적으로 책정되는 자연에 대한 권리에 따라 결정된다.³⁷⁾ 계몽주의에 뿌리박고 있는 인간과 사물의 구분이 인간 중심적 관점의 철학적 배경을 제공하는데, 이는 인간이 그 자체 목적이 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목적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 개념을 두고 소위 “생태 중심적 관점”의 비판이 일어난다. 이 비판은 인간과 자연의

33) Eberhard Klein, Recht auf Umweltschutz als völkerrechtliches Individualgrundrecht?, in: Jürgen Schwarzh(Hrsg.), Grundrechtsschutz im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Recht, Festschrift für Werner von Simson, Baden-Baden, 1983, 251쪽.

34) Klaus Dicke, Mensch, Umwelt und Natur, VN, H. 2, 1985, 61쪽.

35) 단지 인간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36) M. Kloepfer, Umweltrecht, C. H. Beck, München, 1989, 13쪽.

37) Klaus Bosselmann, Eigene Rechte für die natur?, Kritische Justiz, Jg. 19, 1986, 5쪽.

관계에 대한 인간중심적 시각을 하나의 주체-객체-관계로서 비판하고, 인간과 자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비인간적 자연의 가치를 독자성과 고유 가치의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길 것을 요구한다. 이 관점의 핵심은 “자연의 고유 권리” 혹은 자연의 독자적인 권리 주체성에 대해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³⁸⁾ 자연을 위한 자연 보호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는데 즉, 그 자체가 자기 목적이며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인간 이해와 무관하다.

결정적인 것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인권과 연관하여 논의된다는 점이다.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권리주체로서의 인간과 함께, 인권의 이론과 분류 체계에 파고 들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유권 이론”의 지지자들조차 기본권 체계가 권리주체로서의 자연과 함께 자연 환경권의 인정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은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그 이성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특장지위 진다는 인식의 계몽주의적인 인간과 사물 간의 구분에 바로 인권 개념의 기초가 놓여 있다고 부가될 수 있다.³⁹⁾ 이러한 구분에 포함되어 있는 인권 개념을 위한 귀결과 함께 이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생태 중심적 관점이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몇몇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투적인 표현인 ‘생태권’ 혹은 자연의 권리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정말 무의미한 것이며 단지 더 심해진 개념 혼란을 보여 줄 뿐이다. 권리 관계는 단지 인간들 사이에 존재한다. 권리란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정의된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권리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자연은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연 보존의 청구권을 주장할 때만 단지 거의 간접적으로 권리 관계에 놓여질 수 있을 뿐이다.”⁴⁰⁾

최근에는 인간 중심적 관점과 생태 중심적 관점의 이론적 대립에서 그 실제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의미없는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자연이 자연 그 자체를 위해서 아니면 인간을 위해서 보호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연을 실제로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연계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환경 보호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인간 중심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생태 중심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인간의 인식 능력이 전적으로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부터 일반화시킬 수 있고 정말 생태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러하다.

38) Klaus bosselman, 위의 글, 6-11쪽.

39) Klaus Dicke, 앞의 글, 62쪽.

40) Armin Barthel, 앞의 책, 97쪽.

2. 국가 차원의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국가적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인정은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1970년 이래 실제로 모든 개정된 혹은 새로 제정된 헌법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그 동안 대략 45개국의 헌법들에서 표현되고 있다. 물론 이 권리의 인정은 각각의 헌법 법조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단지 헌법만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⁴¹⁾

3. 쾌적한 환경권의 내용

쾌적한 환경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와 결부된 문제들은 대부분의 필자들에 있어서 “환경”개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어려움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미 그 개념이 지나고 있는 범위는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다. 즉,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생활공간 또는 직접적인 주위환경(Umgebung)으로서, 혹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전체 생물 생활권(gesamte Biosphäre)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는 자연환경 외에 또한 문화적 환경이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의 환경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일이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⁴²⁾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환경 개념에 귀속되는 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어떤 분명한 경향들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 하나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해롭게 하지 않는 “건강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다른 표현 문구는 깨끗한 환경이나 깨끗한 물과 대기에의 권리 등이다. 생태학적으로 잘 가꾸어진 환경 개념은 보다 자주 사용된다. 이와 같은 수식 표현들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내용상의 구체화를 고려할 때 인간의 건강 보호 외에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핵심에 또한 잘 가꾸어진 생태계 보존과 자연을 향유하는 것이 포함된다.

41) 1988년 리스본에서 개최된 “환경권의 보장”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서 헌법조문에서 건강한 환경권의 인정은 환경 보호와 환경과 연관된 개인의 이해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바람직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역 차원의 건강한 환경권을 얻기 위한 노력에서는 1970년대 초이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본권 도입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유럽 의회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유럽 인권 연합을 위한 추가 조항이나 유럽 사회 헌장의 확장이 생각되어질 수 있다. Armin Barthel, 앞의 책, 100-101쪽.

42) Armin Barthel, 앞의 책, 111쪽.

건강한 환경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는 것을 고려할 때 포괄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 권리에 관해서는, 개인들이, 한 개인이건 공동체인건 그러한 권리에 의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장 주된 의무자인데 특히 적절한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개인들의 권리에서 또한 쾌적한 환경권의 실행과 관련된 의무가 비롯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복잡한 망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권리가 실현되려면 모두의 연대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쾌적한 환경권의 실행을 위한, 환경이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 요구가 생기는 것이다. 그와 같은 참여는 물론 각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새로운 권리의 절차적인 특성- 즉 적절한 정보구조와 참여구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 이 재차 지적되고 있다.⁴³⁾

V. 결론

1972년 스톡홀름(Stockholm)宣言의 원칙 1항은 “人間은 尊嚴性和 福祉를 유지할 수 있는 環境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基本的 權利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스톡홀름宣言의 원칙 1항은 1970년대 초반이후 채택된 많은 국가들의 헌법에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국가들의 헌법에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게 하였다.⁴⁴⁾ 이 선언에 뒤이어 각국 정부는 現世代 뿐만 아니라 未來世代를 위해서도 環境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하는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⁴⁵⁾

43) Armin Barthel, 앞의 책, 113-114쪽.

44) Maguelonne Déjeant-Pons/Marc Pallemarts,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2, 11-12쪽.

45) 각국은 자국의 시민과 다른 국가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고 있다.

- 。 생태계 그리고 생물권의 기능에 핵심적인 여러 과정을 유지한다.
- 。 모든 식물종과 동물종의 생존을 보장하고, 자연서식지를 보존함으로써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 。 생물자연자원과 생태계를 이용할 때는 최대한 지속가능한 산출이라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재해를 예방하거나 줄인다.
- 。 적절한 환경보호 기준을 정한다.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330-331쪽.

제3세대 인권의 하나로서 거론되는 환경권에 대하여는 인권의 인플레이션현상을 막기 위하여 불필요하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지만, 세계 40여 개국의 헌법에서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⁴⁶⁾ 마냥 반대만 하고 있을 만큼 사치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각국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보호를 진정 어떠한 규정의 형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진지한 이론적 검토⁴⁷⁾가 화급한 상황임을 명심하고 여기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미래세대⁴⁸⁾에게 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는 부끄럽지 않은 현세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⁴⁹⁾

주제어 : 인권, 인권의 세대개념, 제3세대 인권, 환경권

- 46) 기본권 조항의 형태로서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로는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헌법, 1987년 니카라과아헌법, 1993년 러시아헌법, 1997년 불가리아헌법, 1988년 브라질헌법, 1978년 스페인헌법, 1984년 에쿠아도르헌법, 1989년 이란헌법, 1982년 터키헌법, 1993년 페루헌법, 1997년 포르투갈헌법, 1996년 핀란드헌법 등이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國家目標條項(Staatszielbestimmung)의 형태로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1986년 그리스헌법, 1983년 네덜란드헌법, 2002년 독일기본법, 1998년 북한헌법, 1991년 스위스헌법, 1995년 아르메니아헌법, 1976년 알바니아헌법, 1993년 에스토니아헌법, 1984년 오스트리아헌법, 1985년 인도헌법, 1999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 1978년 태국헌법, 1984년 파나마헌법 등이 국가목표조항의 형태로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http://www.oefre.unibe.ch/law/icl>; Edith Brown Weiss, In Fairness to Future Generations, New York; Transnational Publishers, 1992, 260쪽 이하; 줄저, 『환경헌법』,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55-60쪽, 347-360쪽 참조.
- 47) 여기에 대하여는 최윤철,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환경법연구』, 제27권 제2호, 2005. 9., 377-389쪽 참조.
- 48) 미래세대 환경권에 관하여는 John Edward Davidson, “Tommmrow’s Standing Today: How The Equitable Jurisdiction Clause of Article III, Section 2 Confers Standing Upon Future Generations”, 28 Colum. J. Envtl. L. 185, 2003, 185-221쪽; 줄저, 『환경권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39-77쪽 참조.
- 49) 살라딘은 “未來世代之 權利宣言”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未來世代之가 건강한 공기, 손상을 입지 않은 오존층 및 지구와 우주 사이에서 충분한 열의 전달이 될 것을 요구하는 權利를 가진다 라든가 未來世代之는 건강하고 충분한 수역(Gewässer), 특히 건강하고 충분한 음료수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 등이 있다. Peter Saladin & Christoph Andreas Zenger, 앞의 책, 46-47쪽; Toronto대학교 미래학교수인 Allen Tough는 미래세대가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7가지 사항을 ‘미래세대로부터 온 편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두 번째 사항으로 미래세대가 온전히 살 지구환경을 물려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첫 번째 사항은 평화와 안전). Allen Tough, A Message from future generations, The Futurist, 1995, March-April, Vol. 29, No. 2, 30-32쪽.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고문현, 『환경권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 고문현, 『환경보호의 법적 과제』,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 고문현, 『환경헌법』,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 구와바라 시세이(桑原史成) 저, 구와바라 가즈코(桑原和子) 옮김, 『미나마따의 아픔』, 을지서적, 1990.
- 權寧星,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 金南辰·金連泰, 『행정법 I』, 법문사, 2005.
- 金哲洙,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4.
- 이도원, 『떠도는 생태학』, (주)범양사출판부, 1997.
- 정준금·신연재·최병철·한상진, 『환경과 사회』, 대영문화사, 1999.
- 崔大權, 『헌법학강의』, 박영사, 2001.
- 許 營,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 홍성방, 『환경보호의 법적 문제-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 洪性邦, 『헌법학』, 현암사, 2005.
- 洪準亨, 『환경법』, 박영사, 2001.
- 환경부, 『2004 환경백서』, 2004.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제17호, 2004.

(2) 논문

- 高文炫, “미래세대의 환경권”, 『공법연구』, 제31집 4호, 2003. 5.
- 金文煥, “科學技術과 법-서설-”, 『인권과 정의』, 통권 제254호, 1997. 10.
- 金哲洙, “환경권고”, 『헌법논총』, 제6집, 헌법재판소, 1995.
- Barton, John H., “The Impact of Technology on Legal Systems: Thoughts For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Academic Law Conference, 1997. 10. 11.
11. 세미나발표문(존 에이치 바톤/丁相朝 譯, “기술이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 의 시각에서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3·4권[통권105호], 1997. 12.
- 朴秀赫, “환경국가로 가는 길”, 『환경문제연구총서(VI)』, 대한변호사협회, 1996.
- 朴洪佑, “환경권의 법적 성질”, 『환경법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94집, 법원도서관, 2002.
- 李康熾, “헌법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헌법논총」, 제6집, 헌법재판소, 1995.
- 李庚熙, “과학기술법 연구의 필요성과 과제 -환경문제와 법의 역할-”, 「과학기술법연구」, 창간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1995. 12.
- 최윤철,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또는 환경보호-”, 「환경법연구」, 제27권 제2호, 2005. 9.
- 洪性邦, “제3세대 인권”, 「법정고사」, 1996. 3.
- 洪性邦, “人權과 基本權의 역사적 전개”, 「한림법학 FORUM」,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제7권, 1998.

2. 외국문헌

(1) 단행본

- Barthel, Armin, Die Menschenrechte Der Dritten Generation, Alano Verlag, 1991.
- Déjeant-Pons, Maguelonne/Pallemaerts, Marc,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2.
- Dobson, Andrew(ed.), THE GREEN READER -Essays Toward A Sustainable Society-, SAN FRANCISCO: MERCURY HOUSE, INC., 1991.
- Hesse, Konrad,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idelberg: C. 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1997.
- Kloepfer, M., Umweltrecht, C. H. Beck: München, 1989.
- Saladin, Peter & Zenger, Christoph Andreas, Rechte zukünftiger Generationen, Helbing & Lichtenhahn Verlag AG: Basel/Frankfurt am Main, 1988.
- Sommermann, Karl-Peter, Staatsziele und Staatszielbestimmungen, Tübingen: Mohr Siebeck, 1997.
-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Tschentscher, Axel The Basic Law(Grundgesetz):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May 23rd, 1949), Würzburg/bern: Jurisprudential Verlag, 2003.

Weiss, Edith Brown, In Fairness To Future Generation,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New York;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1992.

原田尚彦, 環境法, 補正版, 弘文堂, 平成6年.

(2) 논문

Alston, Philip, "A Third Generation of Solidarity Rights: Progressive Development or Obfus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29 Neth. Int'l L. Rev. 307, 1985.

Atapattu, Sumudu, "The Right To A Healthy Life Or The Right To Die Polluted?: The Emergence Of A Human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16 Tul. Env'tl. L. J. 65, 2002.

Bachrach, Peter/Baratz, Morton, "Two Faces Of Power", APSR, Vol. 56, 1962.

Bosselmann, Klaus, "Eigene Rechte für die natur?", Kritische Justiz, Jg. 19, 1986.

Brandl, Ernst & Bungert, Hartwin, "Constitutional Entrench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Experiences Abroad", The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16:1, Harvard Law School, Cambridge, MA, 1993.

Davidson, John Edward, "Tommmrow's Standing Today: How The Equitable Jurisdiction Clause of Article III, Section 2 Confers Standing Upon Future Generations", 28 Colum. J. Env'tl. L. 185, 2003.

Dicke, Klaus, "Mensch, Umwelt und Natur", VN, H. 2, 1985.

Flournoy, Alyson C., In search of an environmental ethic, 28 Colum. J. Env'tl. L. 63, 2003.

Klein, Eberhard, "Recht auf Umweltschutz als völkerrechtliches Individualgrundrecht?", in: Jürgen Schwarz(Hrsg.), Grundrechtsschutz im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Recht, Festschrift für Werner von Simson, Baden-Baden, 1983.

Kloepfer, M., "Auf dem Weg zum Umweltstaat", in: Umweltstaat, M. Kloepfer(Hrsg.), Springer-Verlag, Berlin u. a., 1989.

Kloepfer, M., "20a GG", Bonner Kommentar, 79. Lfg., 1997. 3.

Tough, Allen, "A Message from future generations", The Futurist, Vol. 29, No. 2., 1995,

March-April.

横田耕一, “人權の國際的保障と國際人權の國內的保障”, *ジュリスト*, No. 1022, 1993. 5. 1-15日號.

【Abstract】

Environmental Right as A Third Generation Human Right

Koh, Moon Hyun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 after the second world war are revival of natural law, internationalization of human right and socialization of human right. New human right emerged in the name of “a Third Generation Right”. There are a lot of discussions surrounding whether recognizing “a Third Generation Right” or not. There is a skeptical opposition for fear of inflation of human right. But, some kind of third generation right is introduced in renowned constitution textbook and is integral to modern society, into the bargain. Among them, there is an environmental right. Man is both creature and moulder of his environment, which gives him physical sustenance and affords him the opportunity for intellectual, moral, social and spiritual growth. In the long and tortuous evolution of the human race on this planet a stage has been reached when, through the rapid accel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 has acquired the power to transform his environment in countless ways and on an unprecedented scale. Accordingly, we protect our environment in the form of an environmental right. But this kind of provision is not sure in enhancing the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al law comparing to the provision of state goal. From now on, there should be much more study on which kind of provision is more desirable to enhancing the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al law.

Key Words : Human Right, Generation Concept of Human Right, Third Generation Right, Environmental Right
